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2.

발의자 : 이찬열 · 전혜숙 · 황주홍

김동철 · 김철민 · 윤후덕

유승희 · 박찬대 · 윤관석

김종회 · 김현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
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
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
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
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. 이를 시정하기 위하
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, 인쇄사, 유통 관련 사업
자 등(이하 “출판사등”이라 함)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
령할 수 있으나, 출판사들은 영업비밀,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
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.

이에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“납품 및 거래내역,
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”로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근거

를 분명히 하고자 함(안 제23조 제2항 제2호).

법률 제 호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관계 자료”를 “납품 및 거래내역,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간행물의 유통질서) ① (생 략)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, 인쇄사,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23조(간행물의 유통질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납품 및 거래내역,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</u>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관계 자료의 제출명령</u>	2. <u>납품 및 거래내역,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</u> ---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